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8년 2월 14일(수) 09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년 2월 14일(수) 07:00	담당부서	통상법무과
담당과장	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	담 당 자	강석하 사무관(044-203-5773)

불리한 가용정보(AFA) 적용 미국 반덤핑·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 회부

□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**불리한 가용정보(AFA)*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**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, 2.14.(수)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.

* 불리한 가용정보(AFA:Adverse Facts Available)-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, 불리한 가용정보(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)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

○ 미국은 '15.8월 관세법을 개정*한 이래 '16.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**현재까지 총 8건****의 조사에 **불리한 가용정보(AFA)**를 적용해 9.49~60.81%의 반덤핑·상계관세를 부과했다.

* AFA 적용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

** AFA 적용결과

철강 (반덤핑 및 상계관세)	변압기 (반덤핑)
· 도금강판('16.5월) : 반덤핑 47.80% · 냉연강판('16.7월) : 반덤핑 34.33% ('16.8월) : 상계 59.72% · 열연강판('16.9월) : 반덤핑 9.49% ('16.8월) : 상계 58.68%	· 2차재심('18.2월) 최종재판정 : 25.51% · 3차재심('17.3월) 최종판정 : 60.81% · 4차재심('17.8월) 예비판정 : 60.81%

○ 정부는 그간 미국이 **양자 및 다자채널***을 통해 **불리한 가용정보(AFA)**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, 미국의 **불리한 가용정보**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,

* 미국 상무부·미국무역대표부(USTR) 고위급 면담, 세계무역기구(WTO) 반덤핑위원회,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위원회 등

- 법리분석,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결정했고,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**양자협의 요청** 서한을 2.14.(수) 미국에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(AFA)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,

○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세계무역기구(WTO)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**분쟁해결절차***를 진행할 예정이다.

*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.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(미국)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,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제소국(우리나라)은 세계무역기구(WTO) 패널 설치 요청 가능

/끝/

※ 참고 : WTO 분쟁해결절차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| **WTO 분쟁해결절차도**

